

제4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제공자(시설)는 이용자(입소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②계약서의 작성은 제공자(시설)와 이용자(입소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함으로써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의해 **연간단위**로 계약하되, 제공자(시설)와 이용자(입소자) 간의 계약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 (단, 비용수납한도액이 변동시나 재등급 판정 시 **1등급 및 2등급, 3·4·5등급**은 시설급여만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입소비용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12.12]**

1.시설급여 비용은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수가 기준이 변경 시에는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2018.01.01 기준]**

♠ 일반장기입소자(20%)								
분 류	건보수가 (1일당)	본인부담금 (1일당)	비급여 (식사+간식) (1일당)	① 입소비용 (③본인부담금 +②비급여)	② 비급여 (식사+간식)	③ 본인부담금 (20%)	④ 요양수가 (80%)	총계 (①입소비용+ ④요양수가)
1등급(28일)	65,190	13,038	5,000	505,060	140,000	365,060	1,460,260	1,965,320
1등급(30일)				541,140	150,000	391,140	1,564,560	2,105,700
1등급(31일)				559,170	155,000	404,170	1,616,720	2,175,890
2등급(28일)	60,490	12,098		478,740	140,000	338,740	1,354,980	1,833,720
2등급(30일)				512,940	150,000	362,940	1,451,760	1,964,700
2등급(31일)				530,030	155,000	375,030	1,500,160	2,030,190
3,4,5등급(28일)	55,780	11,156		452,360	140,000	312,360	1,249,480	1,701,840
3,4,5등급(30일)				484,680	150,000	334,680	1,338,720	1,823,400
3,4,5등급(31일)				500,830	155,000	345,830	1,383,350	1,884,180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자(10%)								
분 류	건보수가 (1일당)	본인부담금 (1일당)	비급여 (식사+간식) (1일당)	① 입소비용 (③본인부담금 +②비급여)	② 비급여 (식사+간식)	③ 본인부담금 (10%)	④ 요양수가 (90%)	총계 (①입소비용+ ④요양수가)
1등급(28일)	65,190	6,519	5,000	322,530	140,000	182,530	1,642,790	1,965,320
1등급(30일)				345,570	150,000	195,570	1,760,130	2,105,700
1등급(31일)				357,080	155,000	202,080	1,818,810	2,175,890
2등급(28일)	60,490	6,049		309,370	140,000	169,370	1,524,350	1,833,720
2등급(30일)				331,470	150,000	181,470	1,633,230	1,964,700
2등급(31일)				342,510	155,000	187,510	1,687,680	2,030,190
3,4,5등급(28일)	55,780	5,578		296,180	140,000	156,180	1,405,660	1,701,840
3,4,5등급(30일)				317,340	150,000	167,340	1,506,060	1,823,400
3,4,5등급(31일)				327,910	155,000	172,910	1,556,270	1,884,180

※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무료), (의료수급권자-10%), (일반입소자-20%)

※ 비급여 항목 수납기준

- 비급여:식사(1식:1,500원/1일:4,500원), 간식(1일:500원) ⇒1일비급여비용:5,000원
- 상급침실이용료: 특실(1일:5,000원), 1인실(1일:3,000원)
- 이미용서비스:무료(단, 이·미용비, 병원동행시 교통비 등은 시설에서 무료제공하며, 입소자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타시도 등 장거리 차량이용 시 또는 개인여가활동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 및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입소어르신(보호자) 순부담비용**
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료,간식비) + 의료비(의료기관이용시)
+ 비급여(특별간식비)

⑤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이용자(입소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을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2.시설에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 3.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5.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및 퇴원 시에는 입·퇴원 처리 및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계약의 해제<제공자(시설)의 계약해제>

제공자(시설)는 이용자(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이용자(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자(시설)가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용자(입소자)와 이용자(입소자)의 보호자는 어르신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 1.입소계약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및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2.입소비용 또는 제공자(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3.입소비용 또는 제공자(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제공자(시설)와 이용자(입소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제공자(시설)가 인정한 경우
- 4.기타질환 발생 등으로 장기입원조치나 전원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할 경우
- 5.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 6.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제공자(시설)가 인정할 경우
- 7.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8.질병이나 상해로 장기 입원치료를 요할 시 제공자(시설)와 이용자(입소자)가 상호 동의에 의한 경우
- 9.기타 본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의2. 계약의 해제<이용자(입소자)의 계약해제>

이용자(입소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제공자(시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을 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⑥의3. 이용자(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일까지 침실을 제공자(시설)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⑥의4. 이용자(입소자)는 서면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제공자(시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의5. 이용자(입소자)의 신원보증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입소자)의 신병 및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제공자(시설)에게 명도해야 한다.

⑥의6. 명도기일이 지난 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공자(시설)가 임의적으로 처분 시설에 귀속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⑦**계약의 종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제공자(시설) 또는 이용자(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